

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63호(2005.09.01)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2호(2014.09.04)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북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5년 제1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5.02.23)를 통해 의결된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을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5년 3월 일
중 구 청 장

1. 결정 취지

- 중구 북창동 17-1번지 일원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
 - 건축지정선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

2.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

○ 건축지정선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적 용 구 역	계 획 내 용	
기 정	건축지정선	도로경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로1-1호선변, 소로3-3호선변, 소로3-A호선변(보행자전용도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 이면가로의 정연한 가로경관 연출, 가로경관 향상
		1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면도로변 일부 - 가구1,2 : 태평로2가 58-11~58-4번지 - 가구3,4,5 : 태평로2가 69-1~69-12번지 - 가구4,5 : 북창동 20-5~20-1번지 - 가구9,10 : 북창동 18-1~18-12번지 - 가구11 : 북창동 82~23-2, 94-10, 71-1번지 - 가구13,14 : 북창동 14-5~11-3번지 - 가구16 : 93-37~93-45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활한 보행통행 유도 및 가로 개방감 증대
		2m (도로중심선으로부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구16 : 북창동 94-27~94-38번지 	

구 분		적 용 구 역	계 획 내 용	
변 경	건축지정선	도로경계	• 소로1-1호선변, 소로3-3호선변 일부 , 소로3-A호선변(보행자전용도로)	• 주요 이면가로의 정연한 가로경관 연출, 가로경관 향상
		1m	• 이면도로변 일부 - 가구1,2 : 태평로2가 58-11~58-4번지 - 가구3,4,5 : 태평로2가 69-1~69-12번지 - 가구4,5 : 북창동 20-5~20-1번지 - 가구9,10 : 북창동 17-1, 17-2 , 18-1~18-12번지, - 가구11 : 북창동 82~23-2, 94-10, 71-1번지 - 가구13,14 : 북창동 14-5~11-3번지 - 가구16 : 93-37~93-45번지	• 원활한 보행통행 유도 및 가로 개방감 증대
		2m (도로중심선으로부터)	- 가구16 : 북창동 94-27~94-38번지	

○ 건축지정선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북창동 17-1, 17-2번지	건축지정선 1m 후퇴	• 북창동 17-1, 17-2, 17-7번지는 2013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소로3-3호선 도로경계로 건축지정선이 지정되었으나, 해당 도로변은 이미 도로포장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현황 여건을 반영하고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건축지정선을 도로경계로부터 1m 후퇴 지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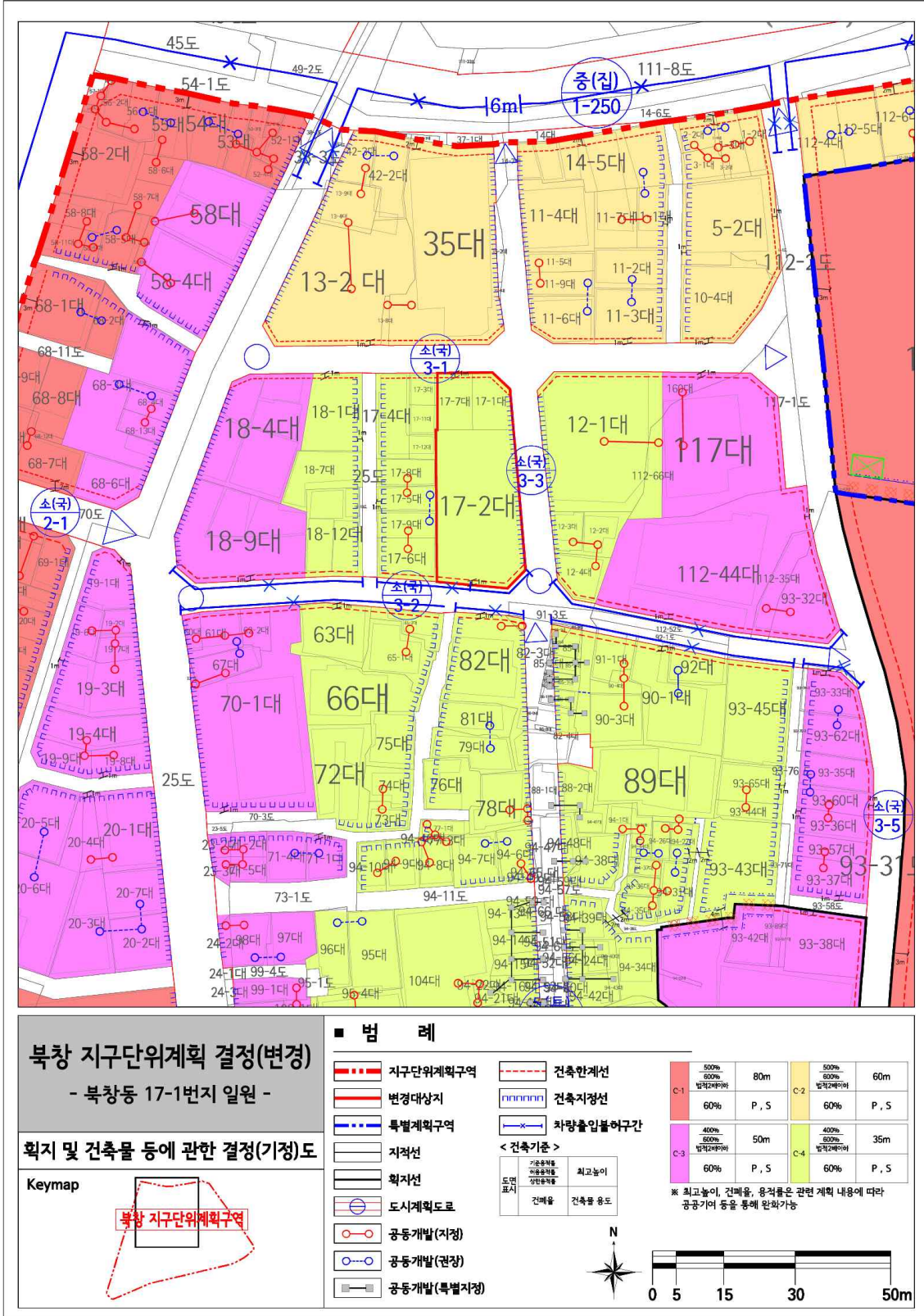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8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 도시관리계획(복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도 >

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